

의안번호	2206567
의 퇴 인	김종민 의원
회 답 일	2025. 3. 5.
추계번호	24A6039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(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)	○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대상에 법 제2조제1호의 아목과 파목을 추가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7조(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－ 현행법상 법 제2조제1호 아목과 파목은 행정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당 목과 관련된 부정경쟁행위 현황 통계가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특허청장 등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대상에 법 제2조제1호의 아목(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)과 파목(기타성과도용행위)¹⁾이 추가 되면 행정조사 비용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현재 특허청은 법 제7조²⁾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,

1)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부정경쟁행위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아.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, 상호, 상표,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·보유·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

(1)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

(2)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

(3)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

파.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

2)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(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) ① 특허청장, 시·도지

2024년 기준으로 조사 인원은 7명이며, 조사 건수는 177건 수준임

- 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대상에 현행법상 제외되는 법 제2조제1호 아목(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)과 파목(기타성과도용행위)을 추가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□ 다만, 특허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법 제2조제1호 아목과 파목은 행정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당 목과 관련된 부정경쟁행위 현황 통계가 없어 조사 건수 등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
- 현행법 제7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 조사 현황을 보면, 조사 인원(공무원)은 7명이며, 조사 건수는 2021년 127건에서 2024년 177건으로 증가 추세임
 - － 현행법 제7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 조사는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고 있어 별도의 조사비용(예산)이 투입되지 않고 있으나,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실을 통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일부 지원을 받고 있음

[표 1] 부정경쟁행위 등 조사 현황

(단위: 명, 건, 백만원)

구분	2021	2022	2023	2024
조사 인원	7	7	7	7
조사 건수	127	129	131	177
인건비 (한국지식재산보호원)	133	136	137	141

자료: 특허청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제2조제1호(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)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,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